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12
----------	------

2021년 3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 (찬성자 11명)

나. 발 의 일 : 2021년 1월 19일

다. 회 부 일 : 2021년 2월 9일

라. 상 정 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2월 2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한기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와 관련하여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에 필요 사항을 마련(기존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서 이관)하고, 가지조문을 정비하는 등 근거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방법 신설(안 제4조)
- 2)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신설(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 2. 16.~2. 23.) 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고, 가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26조 및 제27조)에 근거하여, 당초 구세(區稅)인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완화를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 개정(2007.7.20.)을 통하여 2008년 재산세 세입분부터 시행된 제도임.

\* 구 지방세법 [시행 2007. 7. 20.]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여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특별시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특별시 자치구(區) 간의 심각한 재정불균형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관

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고,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

- 이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제정, 2011.1.1.)으로 이관 규정되었음에도,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정]

####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 ◇관련 조문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이 아직까지 「지방세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 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4577호, 2007. 11. 1., 일부개정 시 신설)되어 유지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장 특별시분 재산세

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27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준,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에 해당 사항을 옮겨 규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나.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

**1)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방법 신설(안 제4조)**

- 안 제4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특별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과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징수된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이는 자치구 주요 세입원인 재산세 징수액 규모의 차이에 따른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상태를 일정부분 해소함으로써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결산상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교부액	1,300,009	1,165,213	1,077,375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 (결산액 기준)

2019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20.1배(강남 5,712억, 강북 284억)에서 5.0배(강남 3,400억, 강북 686억)로 완화
2018년도	○강남, 강북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7.7배(강남 4,792억, 강북 271억)에서 4.7배(강남 2,869억, 강북 610억)로 완화
2017년도	○강남, 도봉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6.7배(강남 4,289억, 도봉 257억)에서 4.6배(강남 2,577억, 도봉 561억)로 완화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26조를 이관하여 규정

- 다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액의 격차가 5.1배(2020년도 결산 전망, 강남구 6,512억 대비 강북구 298억(21.9배) → 강남구 3,870억 대비 강북구 763억(5.1배))에 달하고 있는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부 방법의 개선 여지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3) 조항의 번호 정비(안 제5조부터 제13조)

- 안 제6조부터 제13조는 안 제4조와 제5조 신설과 서로 연관성이 없는 현행 가지조문(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에 각각 새로이 조항을 부여하여, 현행 조항의 번호를 순차적으로 끌어내려 부여하는 개정을 통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u>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생략)	<u>제6조</u> (현행 제4조와 같음)
<u>제5조</u> (서류송달의 방법) (생략)	<u>제7조</u> (현행 제5조와 같음)
<u>제5조의2</u>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생략)	<u>제8조</u> (현행 제5조의2와 같음)
<u>제5조의3</u>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생략)	<u>제9조</u> (현행 제5조의3과 같음)
<u>제5조의4</u>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생략)	<u>제10조</u> (현행 제5조의4와 같음)
<u>제6조</u> (교부금전의 예탁) (생략)	<u>제11조</u> (현행 제6조와 같음)
<u>제7조</u> (지방세심의위원회) (생략)	<u>제12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u>제8조</u> (시행규칙) (생략)	<u>제13조</u> (현행 제8조와 같음)

### 4) 부칙

- 부칙 안 제1조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본 조례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본 조례개정안에 따라 개정된 해당 조항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 결어

- 본 개정 조례안은 4개의 지방세 관련법령 체계(첨부자료 참조)에 맞게 관련 조례의 통일된 체계를 갖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제정(2011.1.1.) 이후 10년이 경과 되도록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규정을 다른 근거법령에 근거한 조례(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 방치하였는바,
  - 재무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적합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1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1월 19일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김경우, 김재형,  
김태호,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추승우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와 관련하여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에 필요 사항을 마련(기존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서 이관)하고, 가지조문을 정비하는 등 근거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방법 신설(안 제4조)
- 나.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신설(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제6조와 제7조로 하고, 제5조의2, 제5조의3과 제5조의4는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로 하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4조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5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4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u></p>
<u>&lt;신 설&gt;</u>	<p><u>제5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4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재산세 전출금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관할 구역 안의 구청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자치구별 내역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p>
<p><u>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3조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u></p>	<p><u>제6조(현행 제4조와 같음)</u></p>

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제7조**(현행 제5조와 같음)

<p>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5조의2</u>(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p>	<p><u>제8조</u>(현행 제5조의2와 같음)</p>
<p><u>제5조의3</u>(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p>	<p><u>제9조</u>(현행 제5조의3과 같음)</p>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

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4**(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행 제5조의4와 같음)

<p>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선정 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b>제6조</b>(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p>	<p><b>제11조</b>(현행 제6조와 같음)</p>
<p><b>제7조</b>(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p> <p>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p>	<p><b>제12조</b>(현행 제7조와 같음)</p>

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u>제8조</u>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13조</u> (현행 제8조와 같음)